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영국 : 이전가격문서화 및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신규 규정 제안

영국 과세당국(이하, "HMRC", HM Revenue and Customs)은 OECD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에게 이전가격관련 자료(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는 규정과 연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이하, "IDS",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또한 함께 제출하는 규정 도입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HMRC에 제출하는 정보의 수준이 과거보다 증가하게 되며, HMRC에서는 향후 세무조사에서 해당 자료들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MRC 제안 내용 요약

현재 영국은 이전가격문서화 서식과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정 KPMG

TAX 6 본부

26 April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OECD BEPS Action 13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권고사항에 따라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빠르게 의무화한 다른 다수의 국가들과 달리 현재 영국의 경우 국가별보고서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증빙관리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이전가격문서화 여부를 충족하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이는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MRC는 이전가격문서화에 대한 영국의 유연한 접근 방식은 납세자의 규정준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으나, 동시에 영국 기업들이 이전가격정책 준수 의무에 대해 불필요함을 느끼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도입한 다수 국가들의 경우, 과거보다 기업들이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HMRC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국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국가들의 경우에도, 납세자는 국외특수관계자거래 및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내역을 포함한 명세서를 연간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HMRC는 다음과 같이 IDS에 대한 신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영국 이전가격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영국 기업들의 경우 국외특수관계자 거래 세부내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영국내 특수관계자 거래는 제외됩니다.
- HMRC는 사업 규모, 과세 위험, 다수의 유사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성 기준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KPMG 의견

HMRC의 신규 규정에 대한 제안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수행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HMRC의 제안은 다국적 대기업(현재 영국 국가별보고서 규정이 적용되는 연간 연결 매출 7.5억 EUR(약 1조 원) 이상 기업)에게 BEPS Action 13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다수의 기업들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이전가격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해 왔으므로, 개별기업보고서 문서화에 대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납세자는 HMRC가 보고서 요청 시 30일 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MRC는 정확한 이전가격자료를 추가로 수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보고서내에 포함되는 다수의 증빙 자료(증빙의 주요 출처, 획득시기, 이전가격분석에서 사용되는 방식 등에 대해 기록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IRS, 2020 APMA (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및 상호합의)프로그램 운영결과 발표

2021년 3월, 미국 과세당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2020 APA 및 MAP 프로그램에 대한 Announcement 2021-06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자료는 APA 프로그램의 구조 및 수행하는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06 공고 내용

2021-06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타결된 APA는 총 127건입니다.
- 2020년 APA 갱신 건에 대한 비율은 59%입니다(2019년의 경우 57%).
- 2020년에 타결된 APA의 절반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 모회사를 둔 기업과 미국에 위치한 자회사간의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2020년에 타결된 APA의 대부분은 유형자산 판매 또는 용역제공거래와 관련되어 있지만, 약 25%정도는 무형자산 허여에 대한 거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IRS는 무형자산 관련 거래가 APA 협의 시 가장 까다로운 거래임을 언급함)
- 신규 APA 및 기존 APA(일반 및 쌍방)갱신 시 타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2.7개월이며, 이는 과거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2018년 40.2 개월, 2019년 38.8 개월)

2020년 IRS의 APA관련 통계자료

	일방	쌍방	다자간	합계
신청	15	103	3	121
타결	19	105	3	127
진행	43	384	21	448
갱신	11	64	0	75
갱신 진행	25	154	8	187
취소	0	0	0	0
철회	2	5	0	7

KPMG 의견

COVID-19 가 불러온 사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0년 APA 통계내역은 2019년과 일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규 APA의 접수 건수는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APA가 타결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2020년에 어떠한 APA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PA 합의조건에 따라 기존에 협의되지 않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APA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취소된 APA가 전무하다는 것은 해외 과세당국 및 납세자들이 협력하여 COVID-19 관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벨기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

2021년 3월 18일 벨기에 과세당국은 COVID-19에 대응하여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내에 회계연도가 종료된 납세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1년 10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개별기업보고서 (275LF 양식으로 작성)의 제출기한 역시 2021년 10월 2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벨기에 법인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벨기에에 위치한 법인 또는 다국적 기업의 고정사업장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이익 및 재정수익의 합계가 5,000만 유로(약 670 억원)

이상일 경우(비경상 수익 제외)

-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이 10억 유로(약 1조 3,500억원) 이상일 경우
- 연평균 100명 이상의 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룹의 사업연도 종료 후 12 개월 이내에 통합기업보고서(275 MF 양식으로 작성)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2. 관세 Update

바이든 정부서도 보호주의적 무역구제 관행 계속

세계 시장은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으로 회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관행은 오히려 고착화해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미국의 반덤핑 신규조사는 연간 평균 20~30건 안팎이었으나 2020년에는 총 89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의 재량으로 마음껏 반덤핑 관세율을 높일 수 있는 조사 당국의 보호주의적 기법과 관행도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 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나 '특별시장상황(PMS)'과 같은 문제적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보다 훨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법원을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관세청,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조직 전면개편 시행

관세청은 3월 30일(화)부터, 한층 강화된 국민안전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위기로 위축된 경제활력의 제고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행정 혁신의 구현을 위해 본청 및 세관 전반에 걸쳐 조직을 구조 개편하고 업무체계를 재정비합니다.

※ 전자상거래통관과(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서울세관) 신설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위험물품 분석·검사 업무와 수출입 현장 감시 업무의 통합연계
- ② 우리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와 기업지원 업무의 일원화
- ③ 수출입 물류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이번 조직개편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감수성과 비대면·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백신·방역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OECD Update

바이든 대통령 주요 사업 세제 계획 (Major business tax proposals)

발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경기재건 계획인 'Build back better'의 일부를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경기재건 계획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다루어 졌으며 법인세(corporation taxation) 관련 제시된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소득세(individual taxation)와 관련된 제안은 경기재건 계획의 두 번째 요소의 일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재건 계획의 첫 번째 요소는 "American Jobs Plan" 및 "Made in America Corporate Tax Reform Plan"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American Jobs Plan"은 향후 8년간 약 2조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재원은

“Made in America Corporate Tax Reform Plan”에 따른 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15년에 걸쳐 총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Build back better’의 첫번째 요소에 대한 팩트 시트를 공표했습니다.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

바이든 행정부는 The American Jobs Plan을 총 4개의 주요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도로, 교량, 철도와 같은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
- 깨끗한 식수를 위한 인프라, 광대역 통신망 접근 확대, 전력 인프라 개선, 보수(학교, 대학, 아동보육시설, 연방 건물, 참전용사 병원 시스템 등) 등을 포함한 “how we live at home”에 대한 투자
- 가족 돌봄을 위한 대기기간(waitlist) 감소, 필수 간병인에 대한 혜택 강화 등 “care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
- 청정 에너지 등의 연구개발, 미국 특정지역 내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직업 훈련 및 도제 제도에 대한 투자

The American Jobs Plan은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제혜택(tax incentives)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첨에 The American Jobs Plan 관련 논의된 주요 세금 제안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제안 사항 중 대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동안 언급하였던 사항입니다.

제안 목록	바이든 캠페인에 포함된 제안
Energy and environment-related items	
미국 생산분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세제 혜택(tax incentive)	V
고전압 파워라인(high-voltage capacity power lines)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X
청정 에너지 생산 및 저장을 위한 확대된 direct-pay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및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의 10년 연장 및 단계적 축소	V
미국 산업을 강화하고 탈 탄소화하는 자본 프로젝트	V

개조 및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탄소 캡처 프로젝트 관련 Section 45Q credit 개편 및 확대	V
Housing-related items	
모두가 사용가능(affordable)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전기화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tax credit) *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에 대한 개정/확대인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인지 여부 불분명	부분 적용 (Somewhat)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신규 및 재건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tax credit)	V
Other items	
가정 및 상업용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tax credit) 연장 및 확대	V
소상공인 및 일부 가정에 대한 재난 복원 세액공제(tax credit)	X
고용주가 제공하는 아동보육시설 건설비용의 첫 백만 달러에 대해 50 % 세액공제(tax credit)	V
Section 48C advanced manufacturing tax credit 연장	부분 적용 (Somewhat)

미국 법인세 개정 계획(Made in America Corporate Tax Reform Plan)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The American Jobs Plan과 함께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장려하고, 조세 피난처로의 소득이전을 제한하고,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세 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개정은 세법이 대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가가 조세 피난처가 되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 세율에 대한 경쟁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별첨에 미국 법인세 개정의 주요 세금 제안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제안 사항 중 대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동안 언급하였던 사항입니다.

KPMG observation

상기 절차들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확인된 것 외에 추가적인 법인세 개정 제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가 발표할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 제안과 관련하여 설명의 일부로 더 많은 개정 제안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기술적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입법 과정 중에 제안이 추가되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통제는 몇 가지 입법상의 도전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제정될 수 있는 조세법의 과정과 세부 사항 및 제정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안 목록	바이든 캠페인에 포함된 제안
Business – General	
법인세율을 21 %에서 28 %로 인상	V
대기업의 글로벌 소득 (Global book income)에 대해 15%의 법인 최저세율 적용	V
IRS 기업 집행 예산 증가	X
Business - International	
GILTI - GILTI 세율을 10.5%에서 21%으로 인상	V
GILTI-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DTIR")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수익에 대한 10%) 폐지	V
GILTI - 국가 별 계산	V
법인이 사업을 조세 피난처에 기반을 둔 경우 외국 법인의 소득이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신규 규칙으로 현재의 anti-profit shifting 규칙을 대체	X
해외 무형자산 소득 저세율 과세 (FDII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폐지	X
Anti-inversion 규칙 강화	V
Offshore 일자리와 관련된 공제 거부	V
Onshore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금 공제 제공	V
Business – Energy	
Fossil fuel 보조금 폐지	V
Superfund Trust Fund 세금 복원	X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